

사이버재해보험법안

(박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박정훈 · 진종오 · 박덕흠
정성국 · 고동진 · 신성범
이상휘 · 박충권 · 최수진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,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.

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·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,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,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

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사이버재해보험을 침해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, 데이터 복구비용, 사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,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정보시스템,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함(안 제2조 및 제5조).
- 다.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7조).
- 라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,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(안 제4조).
- 마. 보험료율 산정 시 보험목적물의 위험도,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, 사이버위험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함(안 제10조).
- 바.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·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제

도를 도입하고,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.

사.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.

아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보험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업종별·규모별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·관리하고, 보험사업자는 이를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.

사이버재해보험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침해사고”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말한다.
2. “사이버재해보험”이란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.
 - 가.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 - 나. 데이터 복구비용, 사업 중단 손해 및 사고조사 비용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
3. “보험가입금액”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.
4. “보험료”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

하는 금액을 말한다.

5. “보험금”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6. “손해평가”란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·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.

7. “손해평가인”이란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여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보험사업의 관장) 이 법에 따른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.

제4조(보험가입의무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,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사이버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재해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시기,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의 증명서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보험목적물) 사이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(이하 “보험목적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정보자산으로 한다.

1.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2.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
3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
4. 사물인터넷 기기 및 스마트 기기
5. 산업제어시스템 및 중요인프라 시스템
6. 그 밖에 침해사고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자산

제6조(피보험자) 사이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.

제2장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운영

제7조(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) ①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보험목적물의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

2. 보험가입의무 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

3.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
4. 손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보험사업자) ①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(이하 “보험사업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

2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이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(共濟事業)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

② 보험사업자가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(이하 “기초서류”라 한다)

2. 그 밖에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침해사고의 통지) ① 피보험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(보험료율의 산정) ① 보험사업자는 사이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.

1. 「보험업법」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원칙의 준수
2. 보험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용
3. 제22조에 따른 사이버위험지표의 반영
4.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 및 침해사고 이력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보험가입금액의 한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기초서류의 변경)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험의 모집) ① 사이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보험업법」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
2.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보험사업자는 사이버재해보험을 다른 손해보험과 함께 종합보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지켜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이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, 제97조 및 제98조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보험사업의 회계구분) 보험사업자는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보험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손해평가)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손해평가인

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손해평가인)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보보안 또는 사이버재해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(補修)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2. 제1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
3.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4.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

경우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보험계약의 체결)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(轉嫁)하기 위하여 「보험업법」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9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보험료 지원) ① 정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이버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지원

제21조(보험계약 체결 전 실사)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목적물의 보안 수준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이버위험지표의 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침해사고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업종별·규모별로 표시하는 지표(이하 “사이버위험지표”라 한다)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·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사이버위험지표의 작성 단위·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이버위험지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
④ 보험사업자는 사이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이버위험지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(학술 조사·연구의 진흥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재해 예방과 사이버재해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24조(자료제출 요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.

1. 사이버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
2. 사이버재해 예방 및 대응 현황
3.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되, 제출자료의 내용·범위·기한 및 제출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이 법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보고 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6조(분쟁조정)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(調停)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7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8조(「보험업법」 등의 적용) ① 이 법에 따른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「보험업법」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, 제118조제1항, 제119조, 제120조, 제124조, 제127조, 제128조,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134조제1항, 제136조, 제162조,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“보험회사”는 “보험사업자”로 본다.

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”는 “보험사업자”로 본다.

제5장 벌칙

제29조(벌칙) ①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(收受)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
2. 제1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

제3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1조(과태료)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를 위반한 보험사업자

2. 제14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

③ 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 간부, 일반 간부 직원, 감사인,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2.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를 위반한 자
 2.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7조제1항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위반한 자
 3. 제2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
- 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,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